

윤리강령

제1장 | 총칙

이 윤리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단 조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재단의 임원, 직원, 위원(이하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 기본윤리

1. 재단의 사명과 목표를 공유하고 부여받은 임수를 완수하며,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개인과 재단의 발전을 추구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업무상의 정보와 시민의 성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재단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으며 개인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 모금사업에 대한 윤리

1. 재단은 기부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 하여 모금하며, 모금 확대를 위해 비윤리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재단은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통해 조성되었거나 정치적·종교적 목적 등 특수한 이해관계에 이용될 수 있는 기금을 대상으로 모금하지 않는다.
3. 재단은 기부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기부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재단은 사명과 목표에 반하지 않는 한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기부자의 정보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기부자를 보호하고 최대한 예우한다.
5. 재단은 모금액의 가시적 성과보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증진을 확산하는데 우선의 가치를 둔다.

제4장 | 배분사업에 대한 윤리

1. 재단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단체·수요자 및 사업별로 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한다.

2. 재단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분사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준과 계획, 배분수요자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안내한다.

3. 재단은 배분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법령상 금지된 행위와 관련된 사업, 정치·종교적 목적 등 특수 이해관계에 이용되는 사업을 배분수요로 정하지 않는다.

4. 재단은 배분수요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배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5. 재단은 배분사업의 효과와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여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보고한다.

제5장 | 임직원에 대한 윤리

1.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성별·학력·종교·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

2.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개인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재단에 필요한 전문 인재로 육성하고 개인과 조직의 발전이 함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제6장 | 사회에 대한 윤리

1. 재단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실현의 주체라는 사명감으로 직무에 책임을 다한다.

2. 재단은 국가정책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된 일반 국제법규를 준수한다.

3. 재단은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재단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조직 운영을 통해 공익재단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한다.